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0.01.01]
(제정) 2019.10.01 조례 제1680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기획계
관리책임전화번호 : 454-377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보상사업) 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10.01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